

<p>간 유효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어느 한쪽의 이익을 3년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조항도 아니고, 사업자와 시민의 이익이 상충될 경우 사업자의 이익을 규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조례입법권은 전적으로 의회에 전속된 것으로 특정 조항을 3년간 유효하도록 규정하더라도 의회에서 필요에 따라 개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안 부칙 제7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함.</li> </ul> <p>4. 질의 및 답변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략</li> </ul> <p>5. 토론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ul> <p>6. 소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구성</li> </ul> <p>7. 수정안 요지</p> <p>가. 수정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조에서 재정지원 대상을 제1항의 재정보조대상자와 제2항의 재정보조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용자대상과 보조대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보조 대상에 대하여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한하여 보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li> <li>○ 도시철도사업자에게 면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10조제3항과 이와 관련한 부칙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는 시의 교통정책과 교통행정 여건을 견주어 불합리하고,</li> <li>○ 부칙 제7항은 조례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단서규정을 조례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버스조합·마을버스사업자·각 자치구간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특정사업자의 이익을 3년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li> </ul> <p>나. 수정 주요골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보조대상(제3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한하여 보조</li> </ul> </li> <li>○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 등(제</li> </ul>	<p>10조제3항, 부칙 제3항·제4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철도사업자를 면허대상에서 제외(관련사항 삭제)</li> <li>- 이와 관련하여 부칙중 제3항 및 제4항 삭제</li> <li>○ 규제의 존속기한(부칙 제7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삭제</li> </ul> </li> </ul> <p>8. 심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정안 가결</li> </ul> <p>9. 소수의견의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ul> <p>10. 기타 필요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ul> <hr/> <p>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p> <p>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등에 관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p> <p>안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②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한다.</p> <p>안 제10조제3항중 “바와 같이 도시철도와 일반 노선버스가”를 “바와 같이 일반노선버스가”로 하고, “운행중인 도시철도사업자 또는 일반”을 “운행중인 일반”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도시철도 및 일반 시내버스와”를 “일반 시내버스와”로 한다.</p> <p>안 부칙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제7항을 삭제한다.</p> <p>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등에 관한 조례안</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2항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수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조 또는 용자의 대상·방법 및 상</p>
--	--

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한정면허를 받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정면허"라 함은 법 제5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면허를 말한다.
2. "마을버스"라 함은 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철도 또는 일반 시내버스의 보조·연계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5조제1항가목에 규정된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3. "마을버스운송사업자"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마을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공항버스"라 함은 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5조제1항나목에 규정된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5. "공항버스운송사업자"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공항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시내순환관광버스"라 함은 시내관광을 하려는 내·외국인의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5조제1항다목에 규정된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7. "시내순환관광버스운송사업자"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시내순환관광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일반노선버스"라 함은 마을버스·공항버스·지역순환관광버스가 아닌 시내버스를 말한다.
9. "노선입찰"이라 함은 수익성이 없어 운영을 기피하는 노선에 대하여 시장이 법 제

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개입찰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과 시행규칙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제 2 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대상) ①재정유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한다.

1. 법 제5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②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한다.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일자 및 면허종류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4.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변경·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지원

<p>받은 재정자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7조를 준용하여 보조 또는 용자의 대상·방법·상환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③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금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p> <p>제6조(자금의 보조 또는 용자) ①재정지원으로서의 자금의 용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용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용자기간 및 상환 : 2년 거치 3년 균등분 할상환으로 하되, 상환시기는 분기별로 한다.</li> <li>2. 용자금리 : 연 8퍼센트 이하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리</li> <li>3. 이자계산 및 징수 : 대출일로부터 기산하되, 매년도의 이자는 분기별로 균분하여 징수한다.</li> </ol> <p>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된 자금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자연재해·재난의 발생·경제여건 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용자된 자금에 대한 용자금리의 감면 또는 용자금 상환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재정지원으로서의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방법·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7조(사무의 위탁)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하여 시장과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협의하여 정한다.</p> <p>제 3 장 한정면허를 받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p> <p>제8조(한정면허의 기본원칙) 시장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마을버스·공항 버스· 시내순환관광버스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p>	<p>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장은 일반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 등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한 지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그 지역에 마을버스가 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li> <li>2. 마을버스는 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철도 또는 일반노선버스의 보조기능 및 연계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li> <li>3. 시장은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거나 서울시내의 주요관광지를 관광하는 내·외국인에게 교통편의와 관광편의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항버스와 시내순환관광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li> </ol> <p>제9조(운송사업자의 선정절차) ① 시장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대상 노선을 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신청을 받아 면허기준에의 적합여부 등에 의하여 당해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운행노선</li> <li>2. 운행대수</li> <li>3. 서비스의 수준</li> <li>4. 면허기간</li> <li>5.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제10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①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를 조사하여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의 마을등을 기점 및 종점으로 하여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운행노선·운행대수 등을 먼저 정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의 기점 및 종점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버스정류소를 그 연계지점으로 하여야 하며, 일반노선버스 운행계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개소 이내의 정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③시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p>
---	---

를 공개적으로 모집한 후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차고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 건설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신청이 없거나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노선버스가 간선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은 기존노선을 운행중인 일반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면허할 수 있다.

1. 일반노선버스의 간선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선조정시 노선조정으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도시철도역이나 주요 일반 시내버스 정류장을 기·종점으로 하는 야간 노선버스의 교통수요가 있는 지역의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간에 환승요금 할인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공항버스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① 공항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은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로 하고 경유지는 관광호텔·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외국인거주지역·국제회의장·면세점 및 토산품판매점 등 외래 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지점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 후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차고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 건설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제12조(시내순환관광버스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①시내순환관광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은 관광지로 하고 경유지는 고궁 등의 관광명소, 시장·백화점·면세점·토산품판매점 등 주요 쇼핑센터, 관광호텔, 철도역·지하철역·여객자동차터미널·고속버스터미널·국제회의장 등 내·외국인의 이용이 많은 지역 등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 후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차고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관광편의시설의 설치 등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 건설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서 정하고 있는 관광편의 시설업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면허한다.

제13조(노선입찰에 의한 운수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①시장은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위한 노선입찰을 할 수 있다.

1. 법 제76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2의 7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되는 업체에서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당해 노선의 운행을 희망하는 운수사업자를 모집하여도 수익성이 없다는 사유로 운행희망운수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재난 등으로 야기된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기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선의 신설이나 존속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은 기존 운행실적과 수입금현황, 지역교통여건과 버스이용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노선입찰의 예정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이 노선입찰을 통하여 당해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을 가장 적게 요구한 업체를 우선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제14조(적용규정) 한정면허를 받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법·시행령·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재정지원에 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③(재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재정지원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용자받은 용자금과 재정보조를 받은 보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용자받거나 재정보조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④(한정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법·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하여



은평권역공영차고지본운영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86
----------	-----

2000년 5월 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장 제  
출

나. 회부일자 : 2000년 4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11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  
(2000년 5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교통관리실장 차동득)

가. 제안이유

- 시내버스차고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  
여 추진중인 10개 권역의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중 은평권역 공영차고지가 6  
월말 완공 예정임에 따라 은평권역 차  
고지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를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서울특  
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코자 하는 것  
임.

나. 주요내용

- 은평권역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을 효율  
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은평권역  
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업체  
등에 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취소, 사용료  
의 부과·징수, 행위제한, 시설물의 관리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주차장 및 각종 시설물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  
탁코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태호)

- 은평권역 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인 “서울특별시 공영차고  
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이 지난  
회기에 의회에 접수·계류중에 있으며
- 새로 접수된 계획안 근거규정으로 “서울  
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18조제2항에 근거하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나, 본조례 규정은 대행사업에  
관한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에서 “공사·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특히 필요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 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8조  
처럼 대행사업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얻게  
하거나, “시장이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  
정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과 맞지 않으며
- 서울시 산하의 여타 공사·공단 설치조례  
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며 본 계획안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함.
- 한편, 시설관리공단의 담당부서에서도 본조  
례 제18조의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  
나, 조례개정안의 발의권이 없어서 그 동안  
개정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 있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소위원회
- 미구성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은평권역 공영차고 기본운영계획

우천시 대중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10  
개 권역의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중 은평권역의  
공영차고지 조성공사가 6월말 완공예정임에 따  
라 동 차고지 및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  
리하기 위하여 주차장 및 각종 시설물 등을 전  
문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은평권역 공영차  
고 기본 운영계획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  
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